

1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가. 의 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라 함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성립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주 또는 이사(청산중의 회사에서는 청산인)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결의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취소의 원인이 된다.

나. 청구취지 기재례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피고의 2000. . .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순직과 박원희를 이사로 박상순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주주총회가 2009. 5. 1.에 한 별지 기재의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에는 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피고회사의 2016. 3. 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을 해임하고, 이사 최○○, 이사 채○○, 이사 이○○, 이사 강○○, 감사 김○○을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주주의 주식 수가 주주총회결의요건에 관한 구 상법 제368조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판례] 주식회사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피고회사의 2011. 2. 8.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박○○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이○○를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로 같은 김○○을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 같은 임○○를 피고회사의 이사 겸 회장으로, 같은 조○○, 같은 안○○, 같은 장○○, 같은 정○○, 같은 박정일, 같은 황영순, 같은 최태수를 피고회사의 이사로, 같은 박정일, 같은 황영순을 감사로, 같은 최태수를 피고회사의 상임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0427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등 청구(취소 및 손해배상)

1. 피고회사의 2015. 9. 18.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9조를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까지로 한다.”로 변경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일남, 동 이이남, 동 이삼남, 동 정일남, 동 윤일남, 동 정이남, 동 이삼남, 동 조일남, 동 이사남, 동 이오남에게 각 40,362원, 원고 이육남에게 1,450,180원, 원고 이칠남에게 403,62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상법 제379조의 규정취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②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정관변경결의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 기각한 사례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나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그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③ 주주총회속행 결의는 적법하나 그 결의방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결의에 따른 총회개최행위가 반대주주 등에게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결의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한 경우에는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2971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피고의 2008. 2. 18.자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이사 수를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감사 수를 1인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제3호 의안(소외 김○○, 이○○, 사○○을 상근이사로, 소외 오○○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제4호 의안(소외 장○○를 감사로 신규 선임)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1]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이사 등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갑 회사 최대 주주에게서 을 회사 명의로 갑 회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을 회사를 통하여 갑 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을 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갑 회사 이사 등이 갑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을 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을 회사를 이용하여 갑 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정들만으로는, 을 회사가 위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갑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 회사 이사 등이 설립한 을 회사의 위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갑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의 위 주식취득이 갑 회사의 계산에 의한 주식취득으로서 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1. 피고회사의 2012. 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기재 제1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피고회사의 2012. 2. 24.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목록 기재 제2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예비적병합)

피고가 20○4. 10. 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가 20○5. 2. 1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중 소외 1 명의로 개서된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16,000주(피고가 발행한 주식의 11.4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